

보도 시점 2024.12.15.(일) 12:00 배포 2024.12.15.(일) 10:00

여행사, 스터디카페 등은 '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

- '23년 추가된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15억 건, 발급금액 48.9조 원, 그 중 통신판매업은 발급건수 14.4억 건, 발급금액 45.9조 원으로 크게 증가

□ 국세청(청장 강민수)은 여행사,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하였고, '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○ '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	6 실외 경기장 운영업	11 스키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
2 여행사업	7 스키장 운영업	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
3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	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	13 애완용 동물 장모 및 보호서비스업
4 앰블런스 서비스업	9 수영장 운영업	※ 스터디카페는 '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
5 실내 경기장 운영업	10 볼링장 운영업	

□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'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고, '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*해 왔습니다.

* 의무발행업종: ('23년) 112개 (17개 ↑) → ('24년) 125개 (13개 ↑) → ('25년) 138개 (13개 ↑)

Ⅰ '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련 통계 Ⅰ

- '23년에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,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 건, 발급금액은 48.9조 원이며, 그 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는 14.4억 건, 발급금액은 45.9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

* '23년 현금영수증 전체 발급건수는 46억 건, 발급금액은 167조 원(전년 대비 발급건수 2%, 발급금액 7% 증가)

Ⅰ '23년 추가 의무발행업종 발급현황 Ⅰ



Ⅰ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Ⅰ



□ '25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, 발급 혜택, 의무 위반 시 불이익, 포상금 제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(발급 의무) '25.1.1.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,
 -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하여야 합니다.

- (사업자 혜택)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*를 적용 받을 수 있고,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*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,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.3%(연 1천만 원 한도)

- (근로자 혜택)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」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(의무 위반)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

- 1 소비자나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
- 2 거래대금 30만 원 중 25만 원은 신용카드로, 5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
- 3 거래대금 15만 원을 은행계좌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

- (포상금 제도)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.

□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“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”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립니다.

담당 부서	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	책임자	과 장	김용재 (044-204-3201)
		담당자	사무관	신범하 (044-204-3222)



더 아픈 환자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

-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,
 -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'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- '10년부터 전문직병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¹⁾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제도를 시행하였고,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²⁾하고 있습니다.
 - 1) ('10년) 거래 건당 30만 원 → ('14년 7월 이후) 거래 건당 10만 원
 - 2) 의무발행업종: ('23년) 112개 (17개 ↑) → ('24년) 125개 (13개 ↑) → ('25년) 138개 (13개 ↑)

2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

- '25. 1. 1.부터 여행사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.
 -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,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.
-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,
 -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(010-000-1234)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합니다.
 - 또한, 의무발행가맹점 표지(스티커)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*에 부착하여야 합니다.
 - *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: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·천정(천정걸이 사용)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
 -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: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
 - ※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(국세청고시 제2024-13호, 2024.5.14.)
-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,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* 발간,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.
 - *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→ 국세정책/제도 → 전자(세금)계산서/현금영수증/신용카드 →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→ 참고자료실 → (16번)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북

□ 참고로,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○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.

가 입	☑ 홈택스 → 계산서·영수증·카드 → 현금영수증(가맹점) → 발급 →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
발 급	☑ 홈택스 → 계산서·영수증·카드 → 현금영수증(가맹점) → 발급 →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

Ⅰ '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Ⅰ

업종명 (업종코드)	표준산업 분류코드	업종 정의
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(523252, 523292, 524000)	47422	▶ 각종 의복 액세서리(넥타이, 모자 및 장갑, 스카프, 머플러, 양말 및 스타킹), 가발,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
여행사업 (630600)	75210	▶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,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(523990, 630601)	75290	▶ 숙박 예약 대리 등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
앰불런스 서비스업 (851911)	86901	▶ 자동차,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
실내 경기장 운영업 (924200)	91111	▶ 농구, 배구, 씨름,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
실외 경기장 운영업 (924201)	91112	▶ 육상 경기 축구, 야구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
스키장 운영업 (924304)	91122	▶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
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(924313)	91131	▶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, 골프장,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
수영장 운영업 (924311)	91133	▶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산업활동
볼링장 운영업 (924302)	91134	▶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
스키장등 그외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(809006, 924306, 924310, 924312, 924314)	91139	▶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.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
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(725000)	95110	▶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·유지하는 산업활동
애완용 동물 장모 및 보호서비스업(930919)	96999	▶ 애완 동물의 훈련, 손질, 보호,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스터디카페 (923102)	90212	▶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·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, 회의,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* '25년부터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

3

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시 혜택

-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, 직전 연도 재화·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.3%를 연간 1,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*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②)

*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: ('21년) 2.3조 원 → ('22년) 2.6조 원 → ('23년) 2.7조 원

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(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②) Ⅰ

대상자	○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매업, 음식점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 * (제외) 법인사업자, 직전연도 재화·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○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
요건	○ 과세되는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
공제율	○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.3% (연간 1천만 원 한도) *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「경감 및 공제세액 (가산세 제외)」을 차·가감한 후 납부할 세액 한도로 공제

-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**활용**할 수 있으며,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**소득공제***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*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: ('21년) 33조 원 → ('22년) 39조 원 → ('23년) 생안예정

4

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

-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- 다만,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(010-000-1234)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,
-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%가 감면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Ⅰ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Ⅰ

- (사례 ①)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
- (사례 ②) 거래대금 30만 원 중 25만 원을 신용카드로, 5만 원은 무통장입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받았으나, 은행계좌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
* 총 거래대금(30만 원)이 10만 원 이상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

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(국세기본법 제84조의2)

-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,
- 계약서, 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(세무서)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미발급 신 고

■ 홈택스 → 상담·불복·제보 →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 제보 →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

-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%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,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6

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

-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꾸준히 증가*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
* ('05년) 4.5억 건, 18.6조 원 → ('22년) 45억 건, 156.2조 원 → ('23년) 46억 건, 167.1조 원

-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,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*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('24.6.)

*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처리

확 인 신 청

■ 홈택스 → 증명·등록·신청 → 사업자등록 신청·정정·휴폐업 → 사업자 등록신청 → 업종선택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 여부 안내, 가맹점 가입 신청

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선택 화면

업종 선택

○ 업종 목록

선택	업종구분	업종코드	업태명	업종명	소비자상대업종	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	산업분류코드	제출서류	수정
☐	주	525103	도매 및 소매업	전자상거래 소매...	여	부	(47911) 전자상가...	[확인하기]	[수정]

○ 선택한 업종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, 실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업종 추가설명

○ 선택사항

인허가사업여부	☐ 여 ☒ 부
개별소비세해당여부	도움말 검색
의제주무면허신청	도움말 ☒ 없음 ☐ 의제판매업(일반소매) ☐ 의제판매업(유통음식점)
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	도움말 ☒ 여 ☐ 부

- 앞으로도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, 발급 및 수취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.

-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,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오니

-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‘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’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립니다.

- 【붙임】 1.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
2. 자주 묻는 질문

구 분	일반가맹점	의무발행가맹점
가입 대상	▶ 소비자 상대업종 (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)을 영위하는 자로서 · 법인사업자 ·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	▶ 의무발행업종(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)을 영위하는 사업자 * 수입금액 기준 없음
발급 의무	▶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	▶ (10만 원 미만)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의무 ▶ (10만 원 이상)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
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	▶ (발급거부 가산세) 거부금액의 5% *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▶ (과태료)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 금액의 20%(2회 이상 위반 시)	▶ (10만 원 미만) 일반가맹점과 동일 ▶ (10만 원 이상)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% 가산세 부과 *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% 경감
기 타 제 재	▶ 미가맹 시 ·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% 가산세 부과 ·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·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,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	▶ 미가맹 시 : 일반가맹점과 동일

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-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3의3]에 규정되어 있으며, 국세청 홈택스 「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」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,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▶ 홈택스 로그인 > 계산서·영수증·카드 > 현금영수증(가맹점) > 가맹점 매출 조회 >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

Q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?

-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¹⁾, 손택스²⁾(모바일), 국세상담센터³⁾(☎126)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.

- 1) 홈택스 > 계산서·영수증·카드 > 현금영수증(가맹점) > 발급 >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
- 2) 손택스 > 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> 현금영수증 (가맹점) >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
- 3) ☎126 > 1 (홈택스 이용문의) > 1 (현금영수증) > 1 (한국어) > 4 (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) >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> 1(비밀번호 설정) > 1(가맹점 가입)

Q3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?

-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¹⁾, 손택스²⁾, ARS³⁾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- 1) 국세청 홈택스 > 계산서·영수증·카드 > 현금영수증(가맹점) > 발급 >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
- 2) 국세청 손택스 > 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> 현금영수증 (가맹점) >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
- 3) ☎126 > 1 (홈택스 이용문의) > 1 (현금영수증) > 1 (한국어) > 4 (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) >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> 비밀번호 입력 > 1 (현금영수증 발급) >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입력 + # > 거래내역 입력 + # > 소득공제용(1번), 지출증빙용(2번) 선택 > 발급내역 음성안내

Q4

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하려고 하는데, 표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?

-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의무발행가맹점 표지(스티커)를 받으시거나, 홈택스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▶ 홈택스 화면 하단 자료실 > 검색창에 '스티커' 입력 후 '조회하기' 버튼 클릭 > [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이미지 파일 조회 > 첨부파일 중 '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스티커'를 내려받아 사용

Q5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?

-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.
 -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(010-000-1234)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.

Q6

소비자와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. 건당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?

-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(약정)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며,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 (서면-2021-전자세원-0064, 2021.01.25.)

Q7

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?

-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,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

Q8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?

-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,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Q9

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?

-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.

Q10

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-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 - 다만,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